

##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타임폴리오워드타임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작성기준일 : 2022.07.08

3. 정정사유 :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1.10.21 시행),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거래소 영업일 적용 펀드의 연말 휴장일 관련 판매 및 환매 조항에 영업일 산정 단서 조항 추가

4. 효력발생일 : 2022.07.29

###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2조(용어의정의) 6호	법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6.“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b>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b>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b>법 제 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b>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b>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b>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b>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b>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판매가격)	영업일 산정 단서 조항 추가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b>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b>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영업일 산정 단서 조항 추가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른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른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b>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b>

### <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향 안내	유 의사 법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요약정보			
용어 변경	법 개정사항 반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021.10.21 시행)		
투자비용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주3) 동종 집합투자 기구 연평균 수익률	주석 상세 설명 추가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추가>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b>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이며 모자형 구조의 펀드의 경우 모펀드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b>
제 1 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법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b>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b>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b>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b>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가. 운용전문인력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법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이 투자신탁은 <b>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b>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b>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b>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법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이 투자신탁은 <b>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b>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b>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b>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용어 변경 법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모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b>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b>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구에 자산총액의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① 이 투자신탁은 <b>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b>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구에 자산총액의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라.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수익률 변동성 기준 표 추가</p>		<p>■ 수익률 변동성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959 159 1501 510"> <thead> <tr> <th>위험등급</th> <th>분류기준</th> <th>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매우높은위험</td> <td>25% 초과</td> </tr> <tr> <td>2</td> <td>높은위험</td> <td>15% 초과 25% 이하</td> </tr> <tr> <td>3</td> <td>다소높은위험</td> <td>10% 초과 15% 이하</td> </tr> <tr> <td>4</td> <td>보통위험</td> <td>5% 초과 10% 이하</td> </tr> <tr> <td>5</td> <td>낮은위험</td> <td>0.5% 초과 5% 이하</td> </tr> <tr> <td>6</td> <td>매우 낮은 위험</td> <td>0.5% 이하</td> </tr> </tbody> </table>	위험등급	분류기준	표준편차	1	매우높은위험	25% 초과	2	높은위험	15% 초과 25% 이하	3	다소높은위험	10% 초과 15% 이하	4	보통위험	5% 초과 10% 이하	5	낮은위험	0.5% 초과 5% 이하	6	매우 낮은 위험	0.5% 이하
위험등급	분류기준	표준편차																						
1	매우높은위험	25% 초과																						
2	높은위험	15% 초과 25% 이하																						
3	다소높은위험	10% 초과 15% 이하																						
4	보통위험	5% 초과 10% 이하																						
5	낮은위험	0.5% 초과 5% 이하																						
6	매우 낮은 위험	0.5% 이하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나. 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업데이트</p> <p>주 1) 정정</p>	<p>-</p> <p>주 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 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든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p> <p>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직전 회계연도: 2021.05.27 - 2022.05.26.]</p> <p>※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p> <table border="1" data-bbox="959 1115 1501 1487"> <thead> <tr> <th>구분</th> <th>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th> </tr> </thead> <tbody> <tr> <td>펀드결제수수료(과세)</td> <td>11,642,650</td> </tr> <tr> <td>회계감사비(과세)</td> <td>4,389,489</td> </tr> </tbody> </table> <p>주 2) &lt;추가&gt;</p> <p>-</p> <p>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직전 회계연도: 2021.05.27 - 2022.05.26.]</p> <p>※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p>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펀드결제수수료(과세)	11,642,650	회계감사비(과세)	4,389,489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펀드결제수수료(과세)	11,642,650																							
회계감사비(과세)	4,389,489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REPO중개수수료(과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4,893,276</td> </tr> </table>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REPO중개수수료(과세)	4,893,276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REPO중개수수료(과세)	4,893,276						
주 3) <추가>	-	모투자신탁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 <추가>	-	주 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1.05.27 - 2022.05.2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융비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금융비용	-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금융비용	-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법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이 투자신탁은 <b>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b>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b>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b>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① 집합투자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b>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b>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합니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b>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b>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투자제한 ② 집합투자증권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가 <b>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b>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가 <b>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b>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신설>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법 제 9 조제 19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

(3)편입한 집합투자 증권에 관한 사항	<신설> 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	-	①피투자 펀드의 종류와 특성
다. 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		① 이 투자신탁은 <b>전문투자형 사 모집합투자기구</b>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 에 자산총액의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① 이 투자신탁은 <b>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 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b>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 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50% 초과하 여 투자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 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3. 기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회사의 개요	업데이트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사명 변경으로 인한 변경	(주)미래에셋펀드서비스	한국펀드파트너스